안산대학교	대학발전기금조성및관리운영규정	규정번호	3-2-3
		제정일자	2014.10.01.
		개정일자	2020.06.01.
		개정차수	4차
		소관부서	전략기획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된 발전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전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하며, 아래의 용어는 모두 발전기금에 포함된다.

1. 미지정 기부금이라 함은 교육, 연구 및 장학 등 학교발전을 위하여 기부자가 사용처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대학에 무상으로 출연된 현금을 말한다.
2. 지정 기부금이라 함은 교육시설개선, 교육용 기자재, 교육실습소모품, 도서, 학술연구, 장학금, 학생후생복지 등을 위하여 기부자가 사용처를 지정하여 대학에 무상으로 출연된 현금을 말한다.
3. 미지정 기부품이라 함은 대학이 기부품의 사용처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게 기부자가 사용처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기부하는 현물을 말한다.
4. 지정 기부품이라 함은 교육용 기자재, 교육실습소모품, 도서, 학술연구, 학생후생복지 등을 위해 기부자가 사용처를 지정하여 기부하는 현물을 말한다.
5. 부동산 및 유가증권 기부는 기부자가 대학에 기부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말한다.
6. 기타 기부금(품)은 대학발전기금운영위원회에서 사용기간 및 사용처를 지정한 기부금(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발전기금 조성과 운영 · 관리에 적용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발전기금 조성 · 운용 ·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총장, 전략기획처장, 교무입학처장, 학생성공처장, 대외협력처장, 행정지원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교직원, 발전기금 기부자, 동문, 학부모, 발전기금 전문가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임원 및 임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를 둔다.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전략기획처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부재 또는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전략기획처 소속직원으로 한다.

제7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며,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전기금 설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3. 발전기금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
4. 발전기금 유치자의 보상에 관한 사항
5. 기타 발전기금에 관한 주요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이 정함이 없는 사항은 위원회가 그 의결로써 정한다.

제3장 발전기금의 조성과 관리

제11조(발전기금 모금사업) ① 발전기금 모금사업은 기금부서에서 주관한다. 다만, 모금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단위기관에서의 모금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모금사업 추진 계획을 사전에 기금부서와 협의하여 주관 할 수 있다.

② 기금부서는 단위기관에서 모금사업을 추진할 경우 모금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제반경비) 발전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교비로 충당하되,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으로 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발전기금 운용 · 관리) ① 발전기금의 접수는 전략기획처에서 관장하며, 발전기금의 입금 및 기금운용은 행정지원처에서 총괄한다.

② 발전기금은 교비회계에 편입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회계처리는 교비회계 규정을 따른다.

제14조(영수증 발급) 발전기금을 출연한 기부자의 요청시 총장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① 발전기금 기부자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1]에 따른다.

제16조(기금 유치 장려) ① 기부금 조성에 현저한 공이 있는 교직원이나 발전기금 업무 및 유치 홍보에 상당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로 표창을 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규정 시행 이전에 모금 및 집행된 발전기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